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6. 6.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허리통증 진료 이력이 없는 乙 등 2명과 공모하여 2018.12.12.~2019.1.29. 기간 중 ‘허리를 다쳤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한 뒤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9.1.7.~2020.2.26. 기간 중 A보험회사 등 10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4,366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하였고 5,000만원을 편취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